의안번호	2201005
의 뢰 인	박희승의원
회 답 일	2024. 7. 2.
추계번호	24D05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판매실적,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추가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Ⅲ. 미첨부 사유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은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3,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1) 현행법 제15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제32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은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 내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2024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재정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행 지자체 수 (국비지원 지자체 수)	66 (4)	172 (144)	185 (154)	187 (184)	188 (181)	190 (157)	190 (153)
예산(국비)	100	884	6,690	12,522	8,050	3,522	3,000

주: 지방비 예산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 지원 요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고, 예산요구서와 전년도 판매실적,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청 규모 등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발행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 모두가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

[표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비 지원 비율

구분	인구감소지역[2]	일반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성남, 화성)
할인율	할인율 10%	할인율 7~10%	할인율 자율
국비지원율	국비지원율 5% 지방비 부담 5%	국비지원율 2% 지방비 부담 5~8%	국비지원 없음

주: 제시된 할인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할인율이며,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 개정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지정된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임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4년 기준 190개(광역 11개, 기초 179개)[3][4]임

❑ 다만,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의 재정지원 요청을 할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요청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 장	김안나
추계세제분석관	한예슬
연 락 처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3)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4) 미발행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충청북도 등)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미발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음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자체 현황

❑ 2024년 기준 190개 지자체 발행 중

- (광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발행 중(6개 시·도 미발행)
- (기초) 226개 시·군·구 중 179개 시·군·구가 발행(47곳은 미발행)

구분	발행 지자체	미발행 지자체
합계	190개(광역 11개, 기초 179개)	53개(광역 6개, 기초47개)
서울	서울특별시(광역), 25개 자치구	
부산	부산광역시(광역),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대구광역시(광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인천광역시(광역),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광주광역시(광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전광역시(광역),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광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광역)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광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광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북(광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광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광역)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광역)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북(광역)
경남	경상남도(광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제주도(광역)	